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	보 도 참 고 자 료		
배 포 일	2018. 4. 17. / (총 4매)	담당부서	감염병진단관리과
과 장	유 천 권	전 화	043-719-7840
담 당 자	최 영 실		043-719-7842
	박 재 선		043-719-7849

신종·해외유입 감염병 검사 대비 위해 민관 협력 지속 !

◇ 2018년 제1차 의료계·정부·관련기관 진단검사 전문가 협의회 개최
- 감염병 확인진단 검사능력 강화 및 보건 위기상황 발생 시 민관협력으로 즉각검사 가능

□ 질병관리본부(본부장 정은경)는 **감염병 진단검사 분야의 민·관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'감염병 진단검사 분야 민관협의체 회의'**를 **18일(수)에 개최**한다고 밝혔다.

○ 본 협의체는 2017년 발족 이후 **정기적(반기)으로 협의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, 긴급 현안 발생 시 질병관리본부장의 요청에 따라 즉시 회의를** 개최하여 현안 조율 및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있다.

□ **'감염병 진단검사 분야 민관협의체'는 감염병 확인진단 검사능력 강화 및 신종 감염병 위기상황 발생 시 즉각적 검사기능을 민간까지 확대**하고자 마련되었다.

○ 또한 감염병 위기상황에 대한 민관 진단검사 분야 협력방안을 모색하고, 원인불명 감염병 진단체계 수립 등에 대한 자문을 수행해 왔으며,

○ **국내에서 발생 가능한 감염병에 대한 진단검사법 수립, 진단시약 긴급사용승인 자문, 검사 질관리 평가** 등 **진단검사 전반에 대한 논의 및 정책자문을 수행**해 왔다.
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질병정보 궁금할 때 감염병이 의심될 때 1339 질병관리본부 콜센터

○ 2017년 주요 활동으로는 「감염병의 진단」 [질병관리본부고시 제2017-4호] 기준에 근거한 **「법정감염병 실험실검사 통합 지침」 개정 시**

- 대한진단검사의학회, 대한임상미생물학회, 대한임상정도관리협회 등의 민간전문가들이 **참여하여 민간 진단검사 분야의 검사법이 반영되는 계기**를 마련한 바 있다.

○ 이번 회의에서는 감염병 진단검사 분야 민간협력 네트워크 구축 방안, 감염병법 시행규칙 개정(예정)에 따른 「감염병 진단검사의뢰 및 처리에 관한 규정(안)」(질병관리본부 고시 예정) 논의 등이 이루어질 계획이다.

□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"재출현·신종 감염병 위기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검사기능을 확대하고, 감염병 검사 분야에서 **'보건 분야의 시험·진단검사에 관한 법률(가칭)'을 마련하는 등 국가정책 수립과 운영을 위한 협력체계를 유지 할 것**" 이라고 밝혔다.

붙임. 감염병 진단검사 민관협의체 운영규정
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질병정보 궁금할 때 감염병이 의심될 때 1339 질병관리본부 콜센터

붙임 **감염병 진단검사 민관협의체 운영규정**

□ 감염병 진단검사 민관협의체 운영규정

본 규정은 협의체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협의체 내부 규정임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감염병 진단검사에 관해 민관의 소통 및 협력을 위한 창구를 마련하여 진단검사 전반의 사항에 대한 민간과 정부의 공통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감염병 진단검사 민관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 및 역할) 감염병 진단검사 협의체(이하 '협의체' 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자문 또는 검토한다.

① 감염병 위기상황 또는 위기 우려상황 발생 시 신속한 민관 진단검사 협력 대응에 관한 사항

② 민간과 정부의 이원화된 감염병 진단체계 조율에 관한 사항

③ 진단검사법 개발, 정도평가, 표준품 보급 등의 진단검사 관련 현안에 관한 사항

④ 신종 감염병의 진단법 확립 및 진단시약 긴급사용에 관한 사항

⑤ 원인불명 감염병 발생 시 원인 규명을 위한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

제3조(구성) ① 협의체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질병관리본부장이 위촉한다.

1. 감염병분석센터장
2. 감염병진단관리과장
3. 바이러스분석과장 또는 고위험병원체분석과장
4. 감염병관리과장 또는 감염병감시과장
5.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장
6.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관련 부의 장 중 1인
7. 대한진단검사의학회 임원 중 2인
8. 대한임상미생물학회 임원 중 2인
9. 대한임상검사정도관리협회 임원 중 2인

③ 협의체 위원장은 위원 중 감염병분석센터장과 민간의 전문가 중 1인 호선하여 공동
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질병정보 궁금할 때 감염병이 의심될 때 1339 질병관리본부 콜센터

위원장으로 한다.

제4조(임기) ① 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위원의 임기는 위원 위촉 또는 임명 당시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, 같은 조항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제5조(운영) ① 협의체 회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반기별 1회 이상 개최한다.
② 협의체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.
③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감염병진단관리과 보건연구관으로 한다.

제6조(회의록) ① 협의체의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.
1.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
2.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
3. 회의사항
4. 그밖에 위원장 및 위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사항
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위원들에게 공지하여야 한다.

제8조(회의 수당)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단,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.

제9조(협의체 운영지원) 질병관리본부장은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 및 보조하며,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협의체를 구성한 날부터 시행한다.
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질병정보 궁금할 때 감염병이 의심될 때 1339 질병관리본부 콜센터